

한국간호과학회 연구비 지원 사업 규정

2010. 6. 21 제정

2012. 6. 8 개정

2014. 6. 13 개정

2022. 6. 10 개정

제 1 조 (목적)

이 규정은 한국간호과학회 회원들이 연구자로서 발전하는데 필요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여 연구의욕 고취와 연구능력을 배양하며, 창의적인 연구 활동의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공고)

연구비 모집 공고는 매년 6월에 공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3 조 (연구비 신청자격)

- ① 연구비의 신청 자격은 한국간호과학회 정회원으로 한다.
- ② 학위논문과 동일한 주제로 연구비를 신청할 수 없다
- ③ 박사후과정 신청 시 연구 개시일 기준 국내외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인 자로, 이전에 한국간호과학회 연구비 지원을 받지 않은 자로 한다.

제 4 조 (연구기간)

연구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, 경우에 따라서 1년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 기간은 한국간호과학회 학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 5 조 (연구계획서 심사기준 및 선정 절차)

제출된 연구계획서는 한국간호과학회 학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.

가. 심사기준

- 1) 연구의 목적, 필요성
- 2) 연구내용 및 방법의 창의성과 타당성
- 3) 연구결과의 공헌과 기여도
- 4) 연구책임자의 연구수행능력

나. 선정절차

- 1) 한국간호과학회 학술위원회의 위원이 신청과제를 심사한다.
- 2) 심사된 결과를 기반으로 학술위원회에서 최종 연구 과제를 결정한다.

제 6 조 (연구계획서 내용변경)

승인받은 연구내용의 부분적 변경은 한국 간호과학회 학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 7 조 (연구비 지급)

연구비는 연구계획서 승인 후 일괄(100%) 지급 한다.

제 8 조 (연구보고서 작성 및 제출)

- ① 연구책임자는 최종보고서 3부와 전자문서, 소정의 연구비 사용 내역서 및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간호과학회 학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제출된 연구보고서는 학술위원회에서 연구목적의 달성여부를 평가한 후 완료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③ 연장 승인된 기간 후에도 연구를 완결하지 못한 경우 미결사유서와 함께 사용연구비의 1/2을 반환해야 한다.

제 9조 (연구결과의 학술발표 및 출판)

- ① 연구결과는 연구종료 후 2년 이내에 학진등재 이상의 국.내외 전문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연구결과는 한국간호과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 나 구두 발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연구논문의 표시

연구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문구를 명기하여야 한다.

가. 국문일 경우 ' 이 논문은 20__년도 한국간호과학회 연구비 지원 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음'

나. 영문일 경우 ' This study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Grant of Korean Society of Nursing Science in 20__'

부칙

제 1조. (시행일) 본 규정은 실행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